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의 시설 정비·개선 목적 사용〉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52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의 시설 정비·개선 목적 사용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출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 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
- 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78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의 시설 정비·개선 목적 사용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u>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정비·개선을 기준으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 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¹⁾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1) ‘공포한 후’를 ‘공포 후’로 수정할 필요

도매시장 내에서 금전 징수를 제한하는 현행법 제42조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²⁾)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³⁾

현행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그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0.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⁴⁾은 0.5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상당수의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징수대상인 도매시장법인에게서는 2024년 기준으로 청과부류 708억 200만원, 수산부류 39억 7,600만원, 약용부류 900만원 등 747억 8,700만원 가량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 현행법 제46조제1항에서 제42조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하여도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삭제 <2017. 6. 9.>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4) 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2개소가 해당하나, 서울특별시규칙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가락시장에 대하여만 0.55%를 적용

【 도매시장법인 · 공판장 대상 시장사용료 징수 현황(2024년 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지역	시장명	부류별 시장사용료				
			계	청과	수산물	축산	약용
총계			74,787	70,802	3,976	-	9
중앙	서울	서울가락농수산물	29,456	27,464	1,992	-	-
		서울노량진수산물	-	-	-	-	-
	부산	부산엄궁농산물	2,494	2,494	-	-	-
		부산국제수산물	788	-	788	-	-
	대구	대구북부농수산물	4,848	4,848	-	-	-
	인천	인천남촌농산물	2,045	2,045	-	-	-
		인천삼산농산물	1,533	1,533	-	-	-
	대전	대전오정농수산물	2,617	2,498	119	-	-
		대전노은농수산물	1,776	1,691	85	-	-
	광주	광주각화농산물	2,615	2,615	-	-	-
	울산	울산농수산물	863	785	78	-	-
지방	서울	서울강서농산물	2,995	2,995	-	-	-
	부산	부산반여농산물	2,551	2,551	-	-	-
	인천	인천가좌축산물	-	-	-	-	-
	광주	광주서부농수산물	3,182	3,034	148	-	-
		광주축산물	-	-	-	-	-
	경기	수원농수산물	997	865	132	-	-
		안양농수산물	832	638	194	-	-
		안산농수산물	743	670	73	-	-
		구리농수산물	4,366	4,188	178	-	-
	강원	춘천농수산물	116	116	-	-	-
		원주농산물	246	246	-	-	-
		강릉농산물	-	-	-	-	-
	충북	청주농수산물	912	882	30	-	-
		충주농수산물	256	256	-	-	-
	충남	천안농수산물	593	554	39	-	-
	전북	전주농수산물	413	357	56	-	-
		익산농수산물	421	412	9	-	-
		정읍농산물	65	65	-	-	-
	전남	순천농산물	754	754	-	-	-
		목포농산물	-	-	-	-	-
		여수농산물	-	-	-	-	-

구분	지역	시장명	부류별 시장사용료				
			계	청과	수산물	축산	약용
지방	경북	포항농산물	441	441	-	-	-
		포항수산물	54	-	54	-	-
		안동농수산물	3,620	3,620	-	-	-
		구미농산물	207	207	-	-	-
		경주농산물	5	5	-	-	-
		김천농산물	65	65	-	-	-
		영천농산물	137	137	-	-	-
		영천약초	9	-	-	-	9
	경남	창원팔용농산물	491	491	-	-	-
		창원내서농산물	507	507	-	-	-
		진주농산물	773	773	-	-	-
민영	경기	안양민영축산물	-	-	-	-	-
	경북	상주민영농산물	-	-	-	-	-
		영주민영농산물	-	-	-	-	-

※ 주: 시장도매인(서울강서, 대구북부, 대구한약재 등)을 제외한 자료임

※ 자료: 농식품부, aT, “2024년 도매시장 통계연보”

이때, 현행법은 해당 도매시장 사용료를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 사용료의 징수 목적은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해당함.

개정안은 이와 같이 각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정비·개선 역시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업무이므로 그 징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시설의 정비·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정비·개선 외의 도매시장 유지·관리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으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의 정비·개선을 시장사용료 결정의 기준이 아닌 ‘고려’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3033-311(용자), 330(보조)] 사업을 통하여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장비 개선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비율은 용자사업의 경우 40~50%, 보조사업의 경우 20~30%에 해당하고, 2026년의 경우 용자사업은 2개소(서울가락, 인천삼산), 보조사업은 3개소(서울가락, 인천삼산, 청주)의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416

5) 가장 많은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현재 203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는 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22, p. 168.),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결산 검토보고서”, 2020, p. 50.) 및 ③ 국회예산정책처(“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 p. 70.) 등에서 동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관리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